



제 395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주철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267호)
- 윤재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371호)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959호)

2022.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건 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1. 주철현의원안	1
2. 윤재갑의원안	1
3. 김선교의원안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1. 주철현의원안	2
2. 윤재갑의원안	2
3. 김선교의원안	4
III . 검토의견	5
1. 수협중앙회의 회장을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현재 재임 중인 회장에게도 적용 등	5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을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규정 신설 ...	15
3. 기타 (안 부칙)	20

I. 제안경위

1. 주철현의원안

가. 제 안 자 : 주철현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2. 1. 5.

다. 회 부 일 : 2022. 1. 6.

2. 윤재갑의원안

가. 제 안 자 : 윤재갑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2. 1. 12.

다. 회 부 일 : 2022. 1. 13.

3. 김선교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2. 3. 24.

다. 회 부 일 : 2022. 3.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주철현의원안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은 중앙회에 두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의 회원인 91명의 단위조합장에 의해 선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소수의 조합장에 의한 회장 선출방식으로는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회장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영향력 등이 작용하여 부정선거 야기 등 깨끗하고 공정한 회장선출에 한계가 있고, 4년 단임에 그쳐 수협발전에 지장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회의 회장 선출방식을 전체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체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된 회장선출을 통한 중앙회와 단위조합 운영의 연계성 확보와 함께 이를 통한 전체 수산업계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직접 선출된 중앙회장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1항제3호, 제134조제1항 및 제5항).

2. 윤재갑의원안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회의 회장은 총괄 대표권자이자 총회·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수협의 중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이 회장의 재임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연임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제기되고 있음.

첫째, 현재 4년의 임기는 중장기적인 업무 추진 등 실질적인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조합원 16만여 명, 자산 규모(2020년 수협중앙회 기준) 약 16조 원에 이르는 조직의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임.

둘째, 중앙회의 운영이 회원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평가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회원의 임원 선택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셋째, 기존에 중앙회 회장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단임제를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우려는 2016년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자회사로의 분리, 회장의 비상임화, 회장의 직무 삭제 등으로 상당부분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음.

넷째,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도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이에 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완화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책임경영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5항).

3. 김선교의원안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하 “수협중앙회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산업·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대외활동을 수행하기에 4년의 임기는 짧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수협중앙회장 선출권자인 회원조합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여부도 회원조합의 뜻에 따라 결정되도록 최소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또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3기 내에서 계속 재임할 수 있는 등 거의 모든 선출직의 경우 연임을 허용하고 있어 수협중앙회장에 대하여 연임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에 확실한 동기를 부여하고 수산업·어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수협중앙회장도 2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4조제5항).

Ⅲ. 검토의견

1. 수협중앙회의 회장을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현재 재임 중인 회장에게도 적용 등

주철현의원안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수협 중앙회장’) 이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윤재갑의원안은 수협 중앙회장이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칙으로 연임 허용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며,

김선교의원안은 수협 중앙회장이 2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현 행	주철현의원안	윤재갑의원안	김선교의원안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 ④ (생 략) ⑤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회장은 <u>연임할 수 없으며</u> , 사업 전담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생 략) ② ~ ④ (현행 과 같음) ⑤ ----- ----- ----- 1회에 <u>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u> --- ----- ----- -----.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 ----- ----- 1차에 <u>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u> , -- ----- ----- -----.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 ----- ----- 2기 <u>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으며</u> , -- ----- ----- -----.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제 1 조 ・ 제 2 조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 (생략) 제2조 (연임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회장 에 대하여도 적용 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생략)
----------	---	---	--------------------------------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현행법’이라 함)제134조제5항은 수협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면서 연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회장의 연임을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중임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장이 한 번 재임한 후 4년을 건너뛰어 중임하는 것은 횡수에 제한 없이 가능한 구조임.

수협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은 초기에 대통령 임명제로 시작하였으며, 1989년부터 전체 조합장에 의한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연임・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음. 이후 2010년도에 조합장 직선제는 유지하되 연임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음.¹⁾

1) 수협중앙회장의 임기 변경 연혁과 관련된 법률 개정 경과는 [별첨 1. 수협중앙회장 임기 변경 연혁] 을 참고할 수 있겠음.

[수협 중앙회장 선출방식 및 임기 변경 경과]

연도	수협 중앙회장 선출방식 및 임기
1988 이전	대통령 임명제(3년 임기)
1989~2010	조합장 직선제(4년 임기, 연임·중임 가능)
2010~	조합장 직선제(4년 임기, 연임 불가, 중임 가능)

조합장 직선제 이후 1989년부터 2010년까지, 13대부터 23대까지 재임한 수협 중앙회장은 1차례 연임한 경우는 3인이고, 이 후 24대 중앙회장부터는 2010년 개정된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임. 역대 중앙회장의 재임기간은 아래와 같음.

[역대 중앙회장 재임기간]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박희재	13대('86.07.12 ~ '90.04.19.)	
홍종문	14대('90.04.20 ~ '90.07.23.)	
이방호	15·16대('90.08.21 ~ '95.04.24.)	연임
박종식	17·18대('95.05.22. ~ '00.12.29.)	연임
정상욱	19대('01.01.27. ~ '01.06.12.)	
차석홍	20대('01.07.04 ~ '04.05.25.)	
박종식	21대('04.06.24. ~ '06.12.27.)	임기 도중 사임 정역형(업무상 배임)
이종구	22대('07.01.25. ~ '11.03.24.)	연임→ 단임으로 수협법 개정 (2010년 법 개정 시 경과규정 특례 ²⁾)
	23대('11.03.25. ~ '15.03.24.)	
김임권	24대('15.03.25. ~ '19.03.26.)	
임준택	25대('19.03.27 ~ 현재)	

* 자료 : 해양수산부

- 2) 22·23대 중앙회장으로 재임한 이종구 회장의 경우 22대 중앙회장 재임 중 회장 연임을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현직 회장에 대해서는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경과규정에 따라 1차례 연임 가능하였음.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을 금지하게 된 것은 2009년 2월 부실화된 수협에 대한 경영구조 개편 및 인적쇄신을 위한 수협개혁위원회³⁾ 활동 결과 규모화·다양화된 중앙회 사업의 전문성 있는 추진을 위해 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비상임, 4년 임기 단임제로 전환하여 수협 중앙회장은 대외활동에 전념하는 명예직으로 하되,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하여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0년 4월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된 결과임.

[수협중앙회장 임기 및 직무 변경(2010년 4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상임여부	상 임	비상임(현행법 제129조제2항 ⁴⁾)
임 기	4년, 연임제한 없음	4년, 연임제한
직 무	▪ 지도·교육사업 ▪ 상호금융 및 공제사업 ▪ 사업전담대표이사 해임 요구권 ▪ 회원조합 경영평가 등 지도권	▪ 대외활동 전념 ▪ 회원조합감사는 조감위원장에게 위임 ▪ 회원 지도권한을 부여하되 사업전담 대표이사에게 위임⁵⁾

* 자료 : 해양수산부

3) 위원회 구성 : 민간, 정부, 수산계, 학계 및 수협 등 전문가 11인으로 구성(2008.12.~2009.2.)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9조(임원) ② 제1항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상임으로 한다.

1. 사업전담대표이사
2.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이사
3. 감사위원장

5)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0조(회장의 직무)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의 업무는 제143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는 제129조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38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2. 제13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과 그 부대사업
- 3. 제142조에 따른 중앙회의 지도**
4. 제138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과 대외활동
5. 제138조제1항제6호·제10호 및 제12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6.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7. 그 밖에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개정안은 수협 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을 완화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중앙회장 연임 허용 문제에 관하여는 찬반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먼저,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등 연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의 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경영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년의 임기는 중장기적인 업무 추진 등 실질적인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조직의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수협 중앙회장의 대외활동 효과성을 강화하고 업무수행의 연속성·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개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관련 단체 의견을 조사한 결과, 경영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회 연임에 대해 회원조합 91개 중 70개와 수산단체 24개 중 19개가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심사에 참고할 수 있겠음.

[수협 중앙회장의 1차연임 관련 의견수렴 결과]

구분	계	찬성	반대	의견 미제출	비고(기간)
회원조합	91 (100%)	70 (76.9)	17 (18.7)	4 (4.4)	4개 조합 미제출 (’22.1.12~1.24)
수산단체	24 (100%)	19 (79.2)	2 (8.3)	3 (12.5)	의견조회 24개 단체 중 3개 미제출 (’22.1.20~1.27)

* 자료 : 해양수산부

* 찬성의견을 제출한 70개 회원조합 중 9개 조합은 차기회장부터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찬성

둘째, 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성격이 유사한 다른 협동조합 중앙회의 사례를 살펴보면,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경우 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중앙회장의 중임이 제한되고 있으나, 동 개정안과 같이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임.⁶⁾

이와같이 다른 다수의 협동조합의 경우 중앙회장의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만 이를 금지하는 것은 유사 조합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임.

[다른 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임기 및 연임 허용 여부]

구 분	임기	연임여부	근거
산림조합중앙회	4년	1회 연임	「산림조합법」 제104조제4항
신협중앙회	4년	1회 연임	「신용협동조합법」 제72조제7항
새마을금고중앙회	4년	1회 연임	「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2제5항
중소기업중앙회	4년	1회 연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3조제2항
농협중앙회	4년	중임 불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30조제5항

6) 참고로, 농협중앙회장의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임.

의안번호 211410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의원 등 10인), 2021. 12. 27.

반면, 앞에서 설명한 해양수산부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회원조합 91개 중 17개와 수산단체 24개 중 2개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중앙회장 연임을 제한한 2010년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연임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의 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수협중앙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모든 사업부문과 계열사의 실질적 최고경영자 권한을 행사하는 바, 연임을 허용하는 것은 권력집중이 공고히 될 우려가 있으며, 선거 후 회원조합에 대한 편파적 사업지원과 상대 후보측에 대한 보복성 인사와 같이 권력을 사유화 할 가능성 등 폐단이 우려된다는 것임.

또한, 수협 중앙회장은 이사회를 주재하고 회원과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을 비상임으로 수행하는 직책으로, 경영성과 평가에 따른 재신임 성격의 제도인 연임제도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비상임 회장 체제⁷⁾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7) 참고로 중앙회장 연임을 제한한 2010년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245호, 2010.10.13. 시행) 법률 개정 사유는 다음과 같음.

자. 중앙회 회장의 비상임 명예직화 등(법 제129조제2항, 제130조제2항 및 제131조)

- 1) 중앙회 사업이 규모화 및 다양화되면서 지구별조합장 출신 회장의 경영 전문성 결여와 현행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따른 운영의 비효율 등이 문제되고 있음.
- 2) 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하고, 지도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통합하는 등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함.
- 3) 위와 같이 함으로써 경영 전문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4조 개정 내용]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제134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⑤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⑤ 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한편, 윤재갑 의원안의 연임 허용에 관한 적용례와 관련하여, 현재 재임 중인 중앙회장의 연임 허용 여부를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여지를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중앙회장 연임에 따른 책임성·업무 연속성 제고 효과 등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재임 중인 중앙회장에 대해서 연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적 안정성,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현직자에게 유리한 법 개정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법 개정 이후 선출되는 대표자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앞에서 설명한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찬성 회원조합 중 9개 회원조합이 법 개정 이후 선출되는 차기 회장부터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등을 감안시 재임 중인 회장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 검토 필요 의견임.

참고로, 타 입법례를 보면, 「대한민국헌법」 제128조⁸⁾에서는 대통령의 중임을 제한하면서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였으나,

조합장의 경우 수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 조합장의 연임제한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완화하는 법률 개정시 현직부터 개정 법률을

8)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있고,

과거 중앙회장의 경우 농협 중앙회장, 산림조합 회장, 수협 중앙회장 등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시에는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사례도 있음.

[연임제한 완화시 현직 적용 입법례]

구 분	개정 내용	적용 시점
수협 상임 조합장 <법률 제10838호, 2011. 7. 14.>	연임(1회) → 연임(2회) 가능	현 상임조합장 적용
새마을금고 이사장 <법률 제10437호, 2011. 3. 8.>	연임(1회) → 연임(2회) 가능	현 이사장 적용
신협 이사장 <법률 제11545호, 2012. 12. 11.>	연임(1회) → 연임(2회) 가능	현 이사장 적용
산림조합 상임 조합장 <법률 제10941호, 2011. 7. 25.>	연임(1회) → 연임(2회) 가능	현 상임조합장 적용

[연임 제한시 현직 미적용 입법례]

구 분	개정 내용	적용 시점
농협 중앙회장 <법률 제9761호, 2009. 6. 9.>	연임 가능 → 단임 제한	법률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
산림조합 회장 <법률 제7278호, 2004. 12. 31.>	연임 가능 → 연임 1회로 제한	법률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부터 적용
새마을금고 이사장 <법률 제7658호, 2005. 8. 4.>	3회 계속재임 가능 → 연임 1회로 제한	법률 시행 후 선임되는 이사장부터 적용
수협 중앙회장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연임 가능 → 연임 제한	법률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

따라서 수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려는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연임 허용을 통한 업무 연속성 제고 효과와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해양수산부의 의견과 수협중앙회, 다수의 조합 및 수산단체의 찬성의견, 그리고 연임을 제한한 2010년 법 개정 취지 등을 들어 반대하는 일부 조합 및 수산단체의 의견과 함께, 1차 연임에 찬성하면서도 차기 회장부터 적용하자는 일부 조합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재임 중 회장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한 해양수산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보임⁹⁾.

참고로, 수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고자 하는 개정안과 동일한 논지로 19·20대 국회에서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6519·김우남의원 대표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8914·이완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9251·김철민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논의된 바 있음을 심사에 참고할 수 있겠음.

9) 참고로, 차기 수협 중앙회장 선거는 2023년 3월로 예정되어 있어 약 1년의 기간이 남아 있음.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을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규정 신설

주철현의원안은 총회의 의결사항에서 회장의 선출·해임 규정을 삭제하고, 수협 중앙회장을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주철현의원안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2. (생략) 3. <u>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u> (중앙회의 사업을 각 사업 부문별로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감사위원, 이사의 선출·해임 4. 5. (생략) ② (생략)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u>사업전담대표이사</u> (중앙회의 사업을 각 사업 부문별로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감사위원, 이사의 선출·해임 4.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회장은 <u>총회에서</u>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생략) ⑥ · ⑦ (생략)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 <u>조합원이 투표로 직접</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른 수협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은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

에서 회장이 선출되는 구조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성격이 유사한 다른 협동조합 중앙회의 사례를 살펴보면,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는 각 조합의 대표인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각 조합의 대표인 이사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있음.

[다른 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선출방식]

구 분	선 출 방 식
농협중앙회	○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 - 중앙회장 자격은 회원의 조합원 * 회원조합 1,118개, 조합원 209만명('21년말) * 조합장 직선제 1,118명 + 부가의결권(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
산림조합중앙회	○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 - 중앙회장 자격은 회원의 조합원 * 142개 조합, 39만 조합원('21년말) * 조합장 직선제 142명
신협중앙회	○ 조합의 대표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 - 중앙회장 자격은 회원의 조합원 * 873개 조합, 조합원 660만명('21년말) * 이사장 직선제 873명
새마을금고중앙회	○ 금고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 - 중앙회장 자격은 금고의 회원 * 1,297개 금고, 조합원 831만명('21년말) * 이사장 직선제 1,297명
중소기업중앙회	○ 회원의 대표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 - 중앙회장 자격은 정회원의 대표자 * 921개 조합(정회원 626개, 비회원 295개), 6만8천개 회원사, 종업원 132만명('21년말) * 정회원(조합장) 직선제 626명

* 자료 : 해양수산부

개정안은 수협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회장이 선출되는 구조에서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회장을 선출하는 구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협 중앙회장의 선출방식 변경과 관련해서는 찬반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먼저, 수협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견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

그간 중앙회장과 회원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제한된 인원(92명)만 중앙회장 선거에 참여하여 대다수 조합원의 의사 반영에 한계가 있고, 현재 과반수(47명)만 확보하면 중앙회장으로 당선될 수 있는 구조로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가 혼탁해 질 개연성이 있으나, 법률 개정 시 전체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된 회장 선출을 통해서 중앙회와 단위조합 운영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수산업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임.

반면, 수협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 현행 수협 중앙회장 선출제도는 총회 선출 방식에 따라 선거 절차·비용 간소화 등의 장점이 있으며, 수협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경우 각 조합원들의 중앙회장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 지역에 따른 투표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 특정지역 편중, 전국적인 혼탁선거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임.¹⁰⁾

관련하여 해양수산부가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관련 단체 의견을 조회한 결과, 회원조합은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 91개 조합 중 반대의견이 73개(80.2%), 찬성의견이 14개(15.4%)이며, 수산관련 단체 24개 중 찬성의견이 16개(66.7%), 반대의견이 5개(20.8%)으로 회원조합의 경우 반대의견이 대다수이나, 수산단체의 경우 찬성의견이 많았음.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다만 회원조합과 수산관련 단체 간 입장차가 있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조합원 직접투표를 통한 수협 중앙회장 선출 관련 의견수렴 결과]

구 분	계	찬성	반대	의견 미제출	비고(기간)
회원조합	91 (100%)	14 (15.4)	73 (80.2)	4 (4.4)	4개 조합 미제출 (’22.1.12~1.24)
수산단체	24 (100%)	16 (66.7)	5 (20.8)	3 (12.5)	의견조회 24개 단체 중 3개 미제출 (’22.1.20~1.27)

* 자료 : 해양수산부

따라서 수협 중앙회장을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조합원 직접 투표를 통한 전체 조합원의 총의를 반영한 회장선출을 통해 중앙회와 단위조합의 연관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조합원들의 정보 부족 등으로

10) 관련하여, 회원조합별 조합원·대의원 수는 [별첨 2. 회원조합별 조합원·대의원 수]를 참고할 수 있겠음.

인한 낱낱이 선거 및 지역에 따른 투표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 다른 협동조합의 사례,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단체 간 입장차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해양수산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기타 (안 부칙)

주철현의원안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하고 회장 및 조합장의 선출시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윤재갑의원안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하고 연임 허용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며, 김선교의원안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함.

주철현의원안	윤재갑의원안	김선교의원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장 및 조합장의 선출시기에 관한 특례) 제134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회장 선거는 같은 해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장 선거와 함께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제2조(연임 허용에 관한 적용례) (생략)	

각 개정안의 부칙과 관련하여, 시행일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합원 투표나 연임 등 수협 정관 개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일정기간 시행일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주철현의원안의 회장 및 조합장의 선출시기에 관한 특례에서, 현재 회장의 선출시기는 23년 2월로 예정¹¹⁾되어 있는데, 조합장 선거와 함께 3월에 실시하는 경우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 시 중앙회장을 동시에 선출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선거가 불필요해 지는 바, 선거 절차나 비용을 간소화하는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4

11) 중앙회장 선거일에 대하여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2014. 6. 11.에 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중앙회장 선거를 하도록 하고 있고, 수산업협동조합은 중앙회장 선거일을 중앙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40일부터 임기만료일 전일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어, 제25대 회장 선거는 2019. 2. 22.에 실시되었고 현 회장의 임기는 2019. 3. 27.부터 2023. 3. 26.까지임.(「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6990호) p.14 재인용)

□ 제정 1962.1.20 (법률 제1013호)

- 제128조(임원의 임명과 임기) ① 중앙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청으로 내각수반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농림부장관이 제청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개정 1963.12.16 (법률 제1585호)

- 제128조(임원의 임명과 임기) ① 중앙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농림부장관이 제청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개정 1966.8.3 (법률 제1817호)

- 제128조(임원의 임면과 임기) ① 중앙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자로서 수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제청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개정 1973.3.5 (법률 제2578호)

- 제128조 (임원의 임면과 임기) ① 회장은 수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개정 1988.12.31 (법률 제4084호)

- 제128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⑥ 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개정 1994.12.22 (법률 제4820호)

- 제128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⑥ 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개정 2005.7.1 (법률 제7311호)

- 제134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⑤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회장 및 사업전담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개정 2010.4.12 (법률 제10245호)

- 제134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⑤ 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참고 2

회원조합별 조합원 · 대의원 수

구 분	계	전남	경남	충남	전북	제주	경인	경북	부산	강원	울산
조합원수	154,873 (100%)	48,649 (31.4%)	24,838 (16%)	22,326 (14.4%)	13,391 (8.6%)	12,146 (7.8%)	11,581 (7.5%)	7,632 (4.9%)	6,598 (4.3%)	4,614 (3.0%)	3,098 (2.0%)
조 합 수	91개	20	18	8	4	7	8	9	7	9	1

순번	지역	조합명	조합원	대의원	비고	순번	지역	조합명	조합원	대의원	비고
1	강원	원덕	253	17	지구별	47	부산	대형기선저인망	122	0	업종별
2	강원	대포	254	20	지구별	48	부산	제1·2구잡수기	133	0	업종별
3	강원	죽왕	283	16	지구별	49	부산	기장	1,579	27	지구별
4	강원	속초시	374	20	지구별	50	부산	부경신항	2,063	39	지구별
5	강원	동해시	424	16	지구별	51	부산	부산시	2,643	37	지구별
6	강원	양양군	464	24	지구별	52	울산	울산	3,098	40	지구별
7	강원	삼척	741	19	지구별	53	전남	전남정치망	32	0	업종별
8	강원	강원고성군	782	20	지구별	54	전남	제3·4구잡수기	87	0	업종별
9	강원	강릉시	1,039	26	지구별	55	전남	근해유망	107	13	업종별
10	경남	멸치권현망	52	0	업종별	56	전남	전남서부어류양식	191	20	업종별
11	경남	근해통발	89	0	업종별	57	전남	민물장어양식	383	25	업종별
12	경남	경남정치망	136	0	업종별	58	전남	서남해수어류양식	517	20	업종별
13	경남	멍게수하식	354	0	업종별	59	전남	거문도	625	20	지구별
14	경남	패류살포양식	454	28	업종별	60	전남	나로도	1,344	21	지구별
15	경남	굴수하식	1,029	0	업종별	61	전남	전남동부	1,685	27	지구별
16	경남	창원서부	435	16	지구별	62	전남	강진군	2,130	29	지구별
17	경남	사랑	470	18	지구별	63	전남	장흥군	2,252	30	지구별
18	경남	육지	485	18	지구별	64	전남	해남군	2,333	38	지구별
19	경남	사천	565	23	지구별	65	전남	영광군	2,434	29	지구별
20	경남	삼천포	1,379	28	지구별	66	전남	완도소안	2,542	40	지구별
21	경남	진해	1,474	23	지구별	67	전남	신안군	2,904	32	지구별
22	경남	경남고성군	1,630	27	지구별	68	전남	진도군	3,296	39	지구별
23	경남	마산	1,931	28	지구별	69	전남	완도금일	3,870	40	지구별
24	경남	하동군	2,233	39	지구별	70	전남	목포	3,915	40	지구별
25	경남	남해군	3,558	30	지구별	71	전남	고흥군	8,781	40	지구별
26	경남	거제	3,769	33	지구별	72	전남	여수	9,221	40	지구별
27	경남	통영	4,795	38	지구별	73	전북	김제	1,027	20	지구별
28	경북	동해구기선저인망	66	20	업종별	74	전북	고창군	2,156	26	지구별
29	경북	울릉군	385	19	지구별	75	전북	군산시	4,795	39	지구별
30	경북	경주시	813	20	지구별	76	전북	부안	5,413	40	지구별
31	경북	죽변	825	24	지구별	77	제주	제주어류양식	438	0	업종별
32	경북	후포	842	13	지구별	78	제주	추자도	347	20	지구별
33	경북	영덕북부	896	18	지구별	79	제주	서귀포	1,136	33	지구별
34	경북	강구	975	12	지구별	80	제주	모슬포	1,386	20	지구별
35	경북	포항	1,283	26	지구별	81	제주	한림	1,546	35	지구별
36	경북	구룡포	1,547	40	지구별	82	제주	성산포	2,682	28	지구별
37	경인	통조림가공	25	0	가공	83	제주	제주시	4,611	38	지구별
38	경인	근해안강망	96	14	업종별	84	충남	서천서부	908	20	지구별
39	경인	냉동냉장	140	0	가공	85	충남	서천군	1,049	20	지구별
40	경인	영흥	1,144	16	지구별	86	충남	태안남부	1,076	20	지구별
41	경인	경인북부	1,185	28	지구별	87	충남	대천서부	1,248	19	지구별
42	경인	인천	2,113	33	지구별	88	충남	당진	2,043	30	지구별
43	경인	경기남부	2,646	40	지구별	89	충남	안면도	3,416	30	지구별
44	경인	옹진	4,232	32	지구별	90	충남	서산	5,421	37	지구별
45	부산	대형선망	18	0	업종별	91	충남	보령	7,165	38	지구별
46	부산	서남구기선저인망	40	0	업종별						